

**공급업체로부터의 부품, 제품 및 원재료 구입 관련 MASCO 회사
표준 조건**

본 조건(이하 "조건(Terms)")은 관련 구매지시서나 협약에서 구매자(본 조건에서는 "우리에게(us)", "우리의(our)" 또는 "우리(we)"라고 언급되어 있음)로 명시되어 있는 Masco 회사를 대신해서 발행되는 것이며 부품, 제품 및 원재료 그리고 모든 서비스("물품(Supplies)")와 관련해 우리가 발행하는 구매지시서 및 본 조건이 첨부되거나 인용되는 기타 협약(이러한 구매지시서나 협약은 종종 "협약(Agreement)"이라고 언급된다)에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협약을 받아들일 경우 본 조건을 숙지하였으며 이의 구속을 받게 된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조건은 우리 컴퓨터 시스템이나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되는 경우 서명 없이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www.masco.com/our-suppliers/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다. 이들 조건은 웹사이트 상에 변경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 내용 역시 우리 모두를 구속하게 된다. 귀하는 이들 조건의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들 조건과 관련하여, 우리의 최고위 구매담당 임원의 별도의 서면 서명이 없이는, 이들 조건에 대한 어떠한 변경, 포기 또는 동의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1. **계약의 승낙과 형성** 우리가 발행하는 모든 구매지시서는 우리가 제안하는 것으로 이들 조건과 구매지시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조건들에 제한된다. 구매지시서의 발행은 귀하가 우리 측에 제시한 판매 오퍼나 견적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매지시서의 중요 사항과 관련된 계약의 존재 사실을 확인하는 귀하의 행위는 구매지시서 및 이들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들 조건에 추가, 변경되거나 조건과 상충되는 오퍼를 귀하가 수락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모든 조건(우리가 발행한 구매지시서 상에 언급된 경우라 하더라도)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며 거부되게 된다. 우리가 발행한 구매지시서가 귀하의 이전 오퍼의 수락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구매지시서의 발행은 귀하의 오퍼 상에 명시된 조건에 추가되거나 이와는 다른 이들 조건에 귀하가 동의한다는 명시적인 조건의 적용을 받으며 그러한 오퍼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귀하는 이들 조건 상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조건과 더불어 우리가 발행한 구매지시서가 해당 구매지시서의 중요한 사실 측면에서 우리 사이의 전체 협약을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들 조건과 협약 내용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2. **추가 조건** 귀하는 공급제품에 우리 현장에서의 건설, 설치 또는 수리 서비스가 포함되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및 웹사이트 상에서 확인 가능한 계약업체 안전 & 환경정책과 관련해 발행된 구매지시서 관련 보충 조건이 귀하의 공급제품 제공에 적용된다는 데 동의한다. 또한 공급제품 제공과 관련해 귀하가 우리의 장비나 위탁자산을 이용하는 경우, 장비 및 위탁자산 관련 Masco 보충 조건("장비 및 위탁자산 조건")이,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귀하에게 서면으로 제공되거나 웹사이트 상에서 확인 가능하건 그 방법 여하에 상관없이, 귀하의 공급제품 제공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귀하는 이들 문서를 웹사이트 상에서 확인하고 검토한다는 데 동의한다. 공개 금지, 위탁, 공급, 양도 또는 구매지시서 발행일 현재 유효한 리베이트 협약 등 물품과 관련하여 귀하와 체결된 모든 서면 협약은, 구매지시서가 발행된 이후 해당 협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지속해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한 협약서의 제공은, 가능한 한도에서, 이들 조건과 일관성을 가지고 누적적인 것으로 간주되게 되나, 이것이 비합리적인 경우, 구매지시서 상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들 간에 서면으로 합의되어 있지 않은 한 그러한 기타 협약의 조건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3. **구매 및 판매** 귀하는 협약서에 명시된 수량의 공급제품을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정보 및 계획 목적 차원에서 제품의 향후 물량이나 수량에 대한 예측, 예상 또는 추정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 내용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수량 추정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성격의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표시, 보증이나 약속도 하지 않는다.

4. **변경** 우리는 서면 통지를 통해, 페널티 부담 없이 언제라도 공급제품 관련 주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귀하가 그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즉각 우리에게 반대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우리가 요청하는 변경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서면 동의 없이도 귀하가 임의로 내용을 변경해서도 안 된다. 공급제품과 관련해, 원재료나 제조위치 상의 변경, 제품의 형태, 및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경이나 생산 관련 비용이나 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즉각 통지해야 하며, 생산 관련 원가나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가격/지급조건** 본 협약에서 언급되는 가격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미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되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및 기타 관련 세금, 관세, 수수료 및 운송, 포장 및 보관 관련 기타 수수료가 포함된다. 지급조건은 본 협약에 명시된 적립기간말(EOP) 조건으로 한다. 귀하가 보증하는 가격은 본 협약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적은 수량의 물품에 대해 귀하가 다른 고객에게 적용하는 가격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a) 귀하가 통상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할인, 리베이트 및 인센티브 혜택과 (b) 본 협약에 규정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인도일 기준으로 모든 장비에 적용되는 가격 관련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협약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 할인 기간은 우리가 인보이스를 접수하는 시점과 물품을 인도받는 시점 중 늦은 시점에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약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우리는 지급의무를 포함해서 본 협약 상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유일한 회사가 된다.

6. **인도** 우리는 모든 물품의 운송과 관련해 운송업체와 운송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별 선적 건에는 패키징 슬립(packing slip)이 첨부되어야 한다. 물품 포장은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퀵런) 시점과 물품 수량이 핵심적인 요인이다. (정상적인 영업시간 내에) 100% 완벽하게 인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품 수량 역시 정확해야 한다. 물품 인도 지연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정 주문의 인수가 향후 선적의 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인수한 물품의 반환 권리를 박탈하는 것 또한 아니다. 우리가 정한 인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초 규정된 바에 비해 보다 신속한 운송방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a) 당초 방식과 보다 신속한 방식의 비용 간 차이점에 대해 즉시 우리에게 변제해야 하며, (b) 해당 차이금액만큼 인보이스 금액을 감액하거나 (c) 귀하의 비용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물품을 선적해야 한다.

7. **소유권/손실 위험** 소유권 및 손실 위험은 귀하가 완전한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본 협약에 명시된 위치에서 물품을 인수할 때까지는 귀하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반환 선적 건에 대해서는 귀하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가 물품을 접수하고 이를 수락할 때까지는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8. 불량 물품 귀하는 본 협약의 모든 요건 측면에서 이를 충족하는 물품만을 인도해야 한다. 우리는 물품 제조, 인도 및 완료 단계 어느 시점에서나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수 후라 할지라도 이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된 물품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물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발견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귀하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통지하게 되며 우리의 재량으로 (a) 우리가 정하는 기한 내에 재작업, 교체 또는 하자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b) 하자물품의 인수를 거절하고 이를 반환하며 해당 물품 가액의 반환이나 재인도를 요청하거나 (c) 물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자체적으로 수리하거나 귀하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시정 조치와 관련된 위험 및 비용은 귀하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귀하가 본 협약 상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우리가 정한 선적, 인도 또는 기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접적, 간접적, 결과적 피해,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요건 미충족 물품 관련 지급은 이들 물품에 대한 수락을 구성하지 못하며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에 영향을 주지도 못한다.

9. 보증 귀하가 제공하는 모든 보증 사항에 추가해, 귀하는 물품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보증해야 한다. (a) 신제품으로 재료 및 가공과정 상 결함이 존재하지 않고 상품성 및 품질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b) 우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화학적 구성과 기타 규격, 도면, 샘플이나 각자가 제시한 후 우리 측이 승인한 설명사항 등과 관련해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c) 해당 물품이 생산, 조립되거나 사용되는 국가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d) 우리가 설계를 승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 또는 귀하의 하청업체가 공급하는 범위에서 설계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e) 귀하 또는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모든 표시나 보증 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i) 귀하가 우리의 당초 사용 용도를 알고 있고 모든 물품이 그러한 우리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충분하며 (ii) 귀하가 모든 물품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어떠한 유치권 및 부담채무로부터도 자유로우며, 그러한 소유권을 우리에게 이전할 것이며 (iii) 물품에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업계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보증해야 한다. 귀하는 물품의 판매 및 사용이 미국과 물품 생산국가 또는 물품이 판매되는 모든 국가 내 제3자의 특허, 영업비밀, 상표권, 서비스마크,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이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보증해야 한다. 이러한 귀하의 보증 의무는 우리의 물품 인수, 수락 또는 관련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물품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수락이 (A) 요건 미충족 (B) 잠재적 또는 명백한 하자의 발견 또는 (C) 보증 사항의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우리의 물품 취소나 반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우리의 제품 중 구성품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 보증 기간은 (1) 해당 제품과 관련해 우리가 제시한 보증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2) 해당 물품에 대한 귀하의 보증이 종료되는 시점 중 늦은 시점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10. 리콜 귀하 또는 우리가 결정하거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또는 기타 미국이나 외국 정부 당국(이하 "당국(Agency)")이 물품에 포함되거나 물품을 사용하는 우리 제품과 관련해 리콜, 교체, 수리 또는 환불 명령(이하 "리콜(Recall)")을 내리는 경우에는, 해당 리콜 조치와 관련해 귀하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 고객 또는 당국(안전통지 발표 포함) 등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물품이 리콜 대상일 경우, 귀하가 다음 내용을 포함해(우리 직원 관련 비용, 간접비, 보관비 등) 리콜 관련 모든 문제와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a)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및 접촉 (b) 고객에 대한 환불 및 운송비 (c) 당국에 대한 리콜 내용 보고와 접촉. 당국이 물품과 관련된 심문이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귀하는 이 사실을 즉시 우리에게 통지하고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법률 준수; 기업 실무물품 제조와 관련해, 귀하는 제조국가의 관련 규칙과 법률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물품은 물품의 생산, 라벨링, 운송, 수입, 수출, 라이선스 또는 승인, 환경 문제,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급여, 근로시간 및 조건, 하청업체 선정, 차별, 작업보전/안전 및 차량안전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모든 관련 법률, 규칙, 규제, 명령, 조약, 조례 및 대상국가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귀하는 귀하 또는 귀하의 하청업체가 아이들, 노예, 죄수 또는 기타 강압적인 방식으로 비자발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이들을 학대 가능성 있는 고용이나 부패한 사업(미합중국 해외부패 실무법 또는 기타 국가의 이와 유사한 법률을 위반하는 실무를 포함해)에 참여시키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요청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가 이러한 사항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입증해야 한다. 귀하는 귀하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청구권(아래에 정의되어 있음)에 대해 우리에게 변제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물품에 적용되는 다양한 노동, 환경, 사회 관련 준수 및 기타 프로그램과 정책(이하 "Masco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고객과 라이선스의 경우 우리 및 우리 물품에 적용되는 프로그램과 정책("고객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 Masco 정책은 웹 사이트 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귀하는 Masco 정책 및 우리가 귀하에게 통지하는 모든 관련 고객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준수하며, 귀하의 공급업체들 역시 이를 검토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고객, 라이선스 및 우리는 (i) 귀하 및 귀하의 공급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ii) 본 11조의 규정을 포함해서 본 협약 상 귀하의 의무 이행과 관련해 귀하 및 귀하의 공급업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독립적인 제3의 당사자를 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2. 원재료 우리가 요청하는 경우, 귀하는 물품, 그 구성이나 성분, 원재료 또는 물품에 사용된 물질이나 그 생산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자료 또는 기타 정보의 사본을 우리 측에 제공해야 한다. 귀하는 취급, 운송, 보관, 사용, 재판매, 처분 또는 폐기 과정 동안 누군가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물품 구성 원재료 관련 모든 내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지해야 한다.

13. 고유정보/지적재산권 본 협약과 관련해 우리가 언급하거나 제시한 모든 규격, 도면, 주석, 설명, 엔지니어링 설명, 기술 데이터 및 장비는 참고 목적 상 협약에 포함된 것이다. 귀하는, 우리가 귀하에게 공개하는 모든 정보(기술설계, 생산 및 적용 정보, 금융정보 및 사업계획, 고객, 판매 및 마케팅, 노하우 및 거래비밀 관련 등 정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구두나 서면에 의해, 유형이 물체에 대한 조사에 의하거나, 기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나 물품 제공 과정에서 귀하에 의해 생성된 정보나 작업이 우리의 기밀 및 고유 정보("고유 정보")이며 우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복제, 추출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귀하는 불법적 접근과 공개로부터 고유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자들 간에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귀하는 우리의 고유정보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특허 준비 또는 신청과 관련해 우리의 고유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동의 없이 우리의 고유정보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특허 신청을 포함해 우리의 고유정보를 근거로 한 어떠한 특허출원도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귀하는 고유정보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특허 출원이나 추가적인 등록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 이에 귀하는 우리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물품 제공을 근거로 귀하 또는 귀하 대리인에 의해 도출되는 모든

정보, 문서 또는 발명 내용을 우리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우리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귀하의 자료에서 발견되는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이를 사용, 포함 또는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귀하는, 우리가 요청할 경우, 협약 내용의 이행을 위해 본 협약 관련 작업에 참여하는 귀하의 직원인, 해당 지적재산권이 본 협약 관련 작업과 연관되는 한, 모든 지적재산권 및 해당 지적재산권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저작권, 설계, 특허, 특허출원, 상표권 및 거래비밀에 대한 권리("개선사항(Improvements)")를 우리에게 양도하도록 한다는 데 동의한다. 또한 물품과 관련해 본 협약 기간 동안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발명품과 연관되는 모든 저작권, 설계, 특허, 특허출원, 상표권 및 거래비밀에 대한 전체 권리, 소유권 및 이해관계를 우리 측에 양도하기로 한다. 귀하는 우리가 우리의 비용으로 지적재산권을 준비하고 이를 획득하고 그 내용을 유효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귀하는 우리에게 의해서나 우리를 대신해서 개선사항의 사용과 관련해 모든 지적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에 근거한 어떠한 권리나 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귀하는 개선사항으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특허 출원이나 추가적인 등록을 신청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 귀하는 귀하의 물품 공급에 따른 모든 고유의, 저작권 형태의 자료의 복제, 번역, 발표, 관련 작업의 실시, 사용 및 처분(그리고 다른 이에 대한 그러한 행위의 허가)과 관련해 우리에게 로열티 면제조건인, 비배타적이고 취소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해, 법률 상 인정되는 한도에서, 모든 저작권과 관련 작업은 관련 저작권법들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work made for hire)"로 간주된다.** 업무상 저작물로 간주될 수 없는 모든 업무관련 저작권은 우리가 소유하게 되며 우리가 요청하는 경우 귀하는 우리 측에 이를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본 협약에 의거해 귀하가 우리 측에 제공하는 작업 및 물품의 사용 및 매각과 관련해 완전한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 이전에 존재하는 귀하의 기본적인 기밀정보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귀하가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우리가 요청하거나 귀하가 본 협약상 의무를 완료하는 경우, 귀하는 우리 측에 모든 고유정보를 반환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사본, 요약내용이나 발제물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물품 관련 서비스나 설계, 생산, 매각 또는 사용과 관련해 귀하가 우리에게 공개하는 모든 정보는 본 주문의 일부로서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게 되며, 귀하는 우리가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우리에게 어떤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귀하는 우리의 주문 건과 관련해 귀하가 고유정보로 간주한다는 데 동의하고 귀하가 생산하거나 사용한 샘플, 오버린, 반품 또는 폐기 부품 내용(집합적으로, "잔여 제품(remaining Product)")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들간의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나 우리가 요청하는 경우, 귀하는 우리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모든 잔여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본 협약에 명시된 물품이 조립품이나 조립품의 구성부품으로서 특수한 경우이거나, 우리 상표권이나 기타 표시 마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상표나 기타 지칭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이외의 제3자에게 유사한 원재료를 판매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

14. **이행의 면책** 면책 사건 발생이 직접적인 사유가 되는 이행 지연이나 미이행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음 사건들은 면책사건에 해당된다. 테러, 전쟁, 폭동, 소요, 시위, 화재, 홍수, 지진, 폭풍 및 급수조지. 면책 사건에는 귀하의 하청업체나 공급업체의 지연이나 미이행, 장비유지 관련 가동중단, 장비 고장이나 면책사건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가격으로 물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 에너지, 부품 또는 기타 품목의 확보 불가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면책사건의 발생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사건의 발생 사실과 종료 상황에 대한 서면 통지를 가능한 한 빨리 상대방에게 이행해야 한다. 면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는, 재량에 따라, 본 협약 상 모든 완제품 상태의 물품, 재공품 및 생산, 확보된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구매지시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어떤 책임 부담 없이 해당 구매 건과 관련된 물품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15. **특정 사유에 따른 종료**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는 아무런 책임 부담 없이, 종료 관련 서면 통지상에 명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구매지시서의 전체 내용 또는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a) 보충 내용을 포함해 해당 주문 관련 조건을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b) 우리가 규정한 바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c) 물품의 시기적절한 인도를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도록 업무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 시정할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미이행 상황이나 위반 상황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d)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기거나 자산의 상당부분이 매각되는 경우 또는 (e)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귀하를 상대로 파산법원에 의거한 청구가 신청되는 경우 또는 채권자 이익을 위해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이들 경우에는 상기 절차의 진행 단계 여하에 불구하고 우리가 물품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모든 고유정보의 관리권한을 확보하며 해당 물품 관련 처리를 위해 제3자와 접촉하거나 다른 이를 고용할 수 있다. 본 15조에 의거해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귀하는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직/간접적, 결과적 손실과 비용(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와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본 15조에 의거해 본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우리는, 관련된 청구권과 관련해, 구매지시서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고 이전에 인도되고 수락된 미지급 물품과 우리가 구매하기로 결정한 미인도 물품에 대해 귀하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6. **관의상 협약의 종료** 우리가 고객에게 한 약속으로 인해, 귀하가 임의로 구매지시서를 종료해서는 안 된다. 특정 구매지시서나 협약을 취소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모든 권리에 추가해, 이유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행한 서면 통지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특정 구매지시서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우리는 다음 금액을 중복됨이 없이 귀하에게 지급하게 된다. (a) 구매지시서에 따라 인도 완료되었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모든 물품의 주문금액과 (b) 귀하가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재공품, 부품 및 원재료의 실제 원가에서 우리의 서면 동의 하에 귀하가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물품, 부품 또는 원재료의 합리적인 가액 또는 원가(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파손되거나 손상된 물품, 부품 또는 원재료 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해당 원가가 금액 측면에서 합리적인 경우에 한한다. 본 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급은 협약 종료 시점의 인도 일정 하에서 귀하가 생산하게 되었을 완제품 상태의 물품에 대해 우리가 지급하였을 총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본 조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 또는 귀하의 하청업체가 청구한, 예상이익의 손실, 반영되지 않은 간접비, 청구권 관련 이자, 제품 개발 및 엔지니어링 비용, 시설 및 장비 보수 원가 또는 임대, 미상각 감가상각비 및 구매지시서 취소와 관련된 일반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본 16조에 의거한 협약 종료 유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하의 협약 종료 청구 사실을 우리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구 내용에는 우리가 그러한 청구권 내용을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청구 관련 지급 이전에, 귀하가 제출한 협약 종료 청구 내용상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기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7. **변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귀하는 우리와 우리의 관계사, 자회사, 고객, 임직원과 대리인(집합적으로 "변제받아야 할 당사자")에게 변제하고 모든 청구권, 소송, 판결, 손실과 관련해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a) 귀하의 본 협약이나 조건위반 (b) 물품이나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었거나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리콜(앞의 내용 참조), 폐널티나 조치, 비용, 책임, 피해 및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집합적으로 "청구내용(Claims)"이라고 칭함). (i) 귀하, 귀하의 직원, 하청업체 또는 대리인이나 물품이나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었거나 야기될 것으로 의심되는 사망이나 인명부상 또는 재산상 피해 (ii) 본 조건, 협약 등에 포함되어 있는 귀하의 보증 또는 표시 내용과 관련된 귀하 또는 물품의 조건 미충족이나 그러한 가능성 (iii) 귀하가 제공하거나 귀하의 승인 하에 우리가 귀하에게 제출한 홍보 또는 광고 자료, 보증, 라벨 또는 설명서 (iv) 특허, 설계, 상품명, 상표권, 저작권, 거래비밀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이나 제3자의 소유권 등에 대한 침해 또는 (c) 물품 판매 또는 사용과 관련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우리는 모든 청구 내용에 대해 귀하에게 사전 통지하고 귀하가 그 내용에 대해 방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귀하가 해당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러한 방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 스스로 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에 대해 귀하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가 행한 조치가 청구 내용의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면 통지를 우리에게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비용 부담 하에 그러한 청구 내용에 대한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에 참여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 청구 내용을 해결하거나 이와 관련해 타협해서는 안 된다.
18. **상쇄(Setoff)** 법률 상 인정되는 상쇄 권리에 추가해, 귀하가 부담하고 만기도래하는 모든 금액은 귀하와 귀하의 자회사 및 관계사가 우리와 우리의 자회사 및 관계사에 대해 부담하는 순 채무 및 기타 의무로 간주되게 된다. 우리는 기타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9. **구제책** 본 조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유하는 권리와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법률 또는 지분 상 인정되는 기타 모든 권리나 구제책에 추가되는 것으로 한다. 우리는 본 협약 상 권리의 실행이나 방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기타 전문적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20. **책임의 제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또는 우리의 관계사는 예상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적, 우연적, 간접적, 징벌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복구 관련 이론이나 근거 또는 회수가 가능한 피해의 종류 또는 유형을 부인하거나 (b) 우리 또는 우리 고객에 제기한 클레임과 관련해, 계약시간 제한 기간을 설정하려는 귀하의 시도는 거부될 것이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귀하가 제기하는 구제책 관련 클레임은 조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21. **포기** 어떤 권리나 구제책 행사의 포기가 해당 조항이나 이와 유사한 조항 하에서 이후 발생하는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정 구매지시서와 관련해 미이행의 포기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하며 해당 서면에 명시된 구체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타 다른 과거 또는 미래의 미이행 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22. **양도** 우리는 귀하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해 구매지시서와 관련된 이익이나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 귀하는 우리의 서면 동의 없이 구매지시서를 양도하거나 귀하가 부담하는 의무 이행을 위임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그리고 그러한 양도나 위임의 경우, 우리의 재량에 따라, 구매지시서의 취소로 간주될 수 있다.
23. **의무의 지속/분리가능성** 다음 조항 하에서 당사자들의 의무는 협약의 만료, 미갱신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8, 9, 10, 11, 12, 13, 15, 16, 17, 24, 25조 및 26.조. 관할 법원에 의해 불법이거나 시행불가능한 것으로 선언된 모든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의 시행 불가능성이 협약의 기타 조건의 시행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24. **광고** 우리로부터 구체적인 서면 동의를 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주문 완료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어떤 방식으로든 귀하가 협약 대상인 물품 공급과 관련해 우리 측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광고, 발표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25. **분쟁해결** 본 조건, 협약 또는 본 조건 2조에 언급된 부가 조건("부가 조건")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연관된 모든 분쟁, 청구 또는 논란이 당사자들 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mediation)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하며, 조정절차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중재 절차에 회부하는 것으로 한다. 모든 조정 및 구속력 있는 중재 절차는 오클랜드 카운티 미시건 주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미국 상사중재협회 규칙에 따라 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한다. 본 조항의 규정은 관할권을 보유한 법원에서 적용 가능하며, 법적 집행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해당 법적집행 상대방에게 관련 비용 및 수수료(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하고 항소 대상이 아니며, 관련 당사자나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모든 법원에서 적용된다. 분쟁 해결이나 조정 결정 시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법원을 통해 어떠한 조치를 개시해서는 안 되며, 다만 자신의 지적재산권 및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금지명령적 또는 형평성 법적 구제책을 청구할 수 있다.
26. **준거법/관할권** 본 조건, 협약 및 보증 조건은, 국제사법 관련 법률에 상관없이, 미시건 주 법률의 지배를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되는 것으로 한다.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27. **번역 용어** 본 조건과 금형 및 위탁자산 관련 조건은 편의상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 해당 문서의 영어본과 번역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나 불일치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